
- 2015년 사업소 재무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 획 감 사 실]

□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비고
계		19건	
1	2014~201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	2015	보험료 정산 부적정	
3	2013~2015	공연 홍보물 수의계약 가격결정 부적정	
4	2013~2015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5	2013~2015	□□□□□ 사용허가 관리 소홀	
6	2013~2015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7	201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8	2013~201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9	2014	보조금 정산 검사 부적정	
10	2015	△△△△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금 납입 지연	
11	2013~201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12	2014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13	2013~2015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14	2013~201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5	2014	피복 대신 의류교환 상품권 구입·배부 부적정	
16	2013~2015	공공요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17	2015	보험료 정산 부적정	
18	2008~2015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19	2013~201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후 증빙서류 미첨부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내 용	지급액	통계목	비고
	6건	3,852,000		
2014.01.08	★★회식비	780,000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14.01.08	★★격려 만찬비	522,000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4.03.12	★★회식비	597,000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14.07.09	★★회식비	700,000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14.08.21	★★회식비	720,000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15.01.09	송년 ★★식비	533,000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1.8. ★★회식비 비용 780천 원 등 6건 3,852천 원을 지출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첨부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집행하시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312,400원

【제 목】 보험료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명 : ☆☆☆☆☆ LED 조명기구 교체 공사
- 공사기간 : '15. 3. 2. ~ '15. 3. 31.
- 계약금액 : 금18,000,000원
- 지출일 : '15. 4. 7.
- 도급사 : 삼척시 ●●로 115 □□□□
- 보험료 등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합계	보험료				환경보전비	제경비	
	산재	고용	건강	연금		일반관리비	이윤
312,404	215,759	49,398	-	-	-	15,909	31,338

- 일반관리비 : (보험료+환경보전비)*6%

- 이윤 : (보험료+환경보전비+일반관리비)*11.15%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LED 조명기구 교체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자로부터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도급내역에 명시된 보험료와 비교 정산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312,400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료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정산한 보험료 312,400원을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연 홍보물 수의계약 가격결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공연 홍보물 현황 : 15건 58,324천 원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거래실레가격은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레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가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레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레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 전상서”의 14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에 대하여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가격 비교·검토 없이 업체에서 제출받은 견적서 금액 그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무관리비(201-01)를 공공운영비(201-02)로 집행한 경우 : 총 400건 / 112,163,226원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별표 1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로,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도서구입비(405-02)로 분류하고

사무관리비(201-01)는 소모성 물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소규모 용역 수수료를 집행하는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등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201-02)에서는 우편물 발송요금, 전기료, 보험료를 집행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건물 및 건축물설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와 차량소모품비를 집행하는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정수기 관리비 등 총 400건 112,163,226원을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영비(201-02)에서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세출예산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과목구분에 적합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 사용자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 사용자대장 미작성 내역

적 요	미작성 기간	비고
□□□□□ 사용자대장	2013년 ~ 감사일 현재	

2. 내 용

「삼척시 ▲▲▲▲진흥조례 시행규칙(규칙 제421호, 2012.03.02.)」 제14조에 따르면 □□□□□ 내 대강당 및 소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허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 및 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5조에는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대강당 및 소강당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 사용허가 현황 및 세부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 사용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진흥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집행내역 : 154건 / 44,182천 원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18호, 2012.07.31.)」 제6조에서 정한 [별표 9]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로 분류하고,

사무관리비(201-01)는 소모성 물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집행하는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 시설·장비·물품 등의 임차료 등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201-02)에서는 우편물 발송요금, 전기료, 보험료 등을 집행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건물 및 건축물설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유류대와 차량소모품비 등을 집행하는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2013.03.26.)」에 따르면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는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냉온정수기 임차료 등 총 154건 44,182천 원을 지출하면서, 소규모 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영비(201-02)로 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산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과목구분에 적합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2014.12.1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삼척□□□□관계자 만찬비	660,000원	

2. 내 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87호, 2014.05.28.)」 제 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4.01.01.)」
IV.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 및 300만 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2014. 12. 19. “삼척□□□□관계자 만찬비”로 66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을 위한 50만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이므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내역

적 요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기간	비 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2013년 ~ 2014년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V.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중 “신용카드 보관·관리” 요령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에 따르면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별표 제3호 서식] 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2013년 부터 2014년 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사용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보조금 정산 검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정산서		보조금액		
		신청일	결정일	제출일	검사일	계	시비	자부담
●●●● 기능강화 프로그램 “◎◎◇◇ 가족” (2014.3월~11월)	삼척시◆◆◆◆	2014.02.20.	2014.03.06.	2014.11.19.	2014.12. .	18,584	5,000	13,584

나. 보조금 집행시 계좌입금 집행 현황

(단위: 원)

구 분	업체명	지출일	지급액	지출방법	비 고
계	6건		1,977,640		
□□□□ 프로그램 활동 재료비	△△△	2014. 06. 13.	400,000	계좌입금	카드가맹업체
□□□□ 프로그램 활동 재료비	▲▲▲▲▲	2014. 06. 27.	295,500	계좌입금	카드가맹업체
□□□□ 프로그램 활동 재료비	▽▽▽▽	2014. 07. 10.	300,000	계좌입금	카드가맹업체
□□□□ 프로그램 활동 재료비	▽▽▽▽	2014. 08. 14.	300,000	계좌입금	카드가맹업체
□□□□ 프로그램 활동 재료비	▽▽▽▽	2014. 08. 28.	300,000	계좌입금	카드가맹업체
□□□□ 프로그램 활동 재료비	▼▼▼▼▼	2014. 09. 30.	382,140	계좌입금	카드가맹업체

2. 내 용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 받아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처리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이지만, 위 현황 “나”와 같이 “□□□□ 프로그램 활동 재료비”외 5건 1,977,640원을 계좌입금으로 집행하였는데도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확정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현금집행 지양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정산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금 납입 지연 : 68건 108,418,050원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며,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불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며,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불입하여 함에도 2015.1.1. 부터 2015.9.10.까지 △△△△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금 68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 주시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내역

적 요	카드 사용대장 미작성 기간	비 고
신용카드 사용대장	2013년 ~ 2014년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2013년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V.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중 “신용카드 보관·관리” 요령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에 따르면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별표 제3호 서식] 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대장 및 2013년도의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사용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536,800원

【제 목】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명 : ■■■■■■■■■■ 승강장 지붕 스프링클러 및 생태공원 분수, 작두펌프시설 설치공사
- 공사기간 : '14. 5. 12. ~ '14. 5. 21.
- 계약금액 : 금10,460,400원
- 지출일 : '14. 5. 30.
- 도급사 : 삼척시 ☆☆☆로 97 (주)◎◎◎◎
- 보험료 등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합계	보험료				환 경 보전비	제경비	
	산재	고용	건강	연금		일 반 관리비	이 윤
536,802	167,780	38,412	78,673	108,149	53,681	26,801	63,306

- 일반관리비 : (보험료+환경보전비)*6%

- 이 윤 : (보험료+환경보전비+일반관리비)*13.37%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의하면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승강장 지붕 스프링클러 및 생태공원 분수, 작두뿔프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자로부터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도급내역에 명시된 보험료와 환경보전비를 비교 정산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536,800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정산하지 않은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536,800원은 세입 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2013~2015년 세출예산 집행과목 현황

(단위:원)

번호	세출예산과목 집행현황	건수	지급액
	계	30건	30,009,370
1	자산취득비(405-01)를 공공운영비(201-02),사무관리비(201-01) 로 집행한 경우	5건	17,670,200
2	공공운영비(201-02)를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한 경우	22건	12,335,080
3	사무관리비(201-01)를 공공운영비(201-02)로 집행한 경우	3건	4,090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별표 1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로,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도서구입비(405-02)로 분류하고,

사무관리비(201-01)는 소모성 물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소규모 용역 수수료를 집행하는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등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201-02)에서는 우편물 발송요금, 전기료, 보험료를 집행하는 공공요금 및 체세, 연료비, 건물 및 건축물설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와 차량소모품비를 집행하는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을 집행하며,

자산취득비(405-01)는 건축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정수를 배정 받은 물품구입,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공간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비정수 물품구입 등을 집행하도록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압력밥솥 구입 등 5건 17,670,200원을 자산취득비(405-01)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영비(201-02) 및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하였고, 관용차량 수선 등 22건 12,335,080원은 공공운영비(201-02)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하였으며,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수수료 지출 등 3건 4,090원은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영비(201-02)에서 집행하는 등 2013. 7. 1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30건 30,009,370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세출예산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과목구분에 적합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가.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후 증빙서류 미첨부 : 8건 / 7,822천 원
- 나. 업무추진비 과목 부적정 : 8건 / 3,610,200원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후 증빙서류 미첨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의하면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접대성 경비를 집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 “가”와 같이, 2013.12.30 직원전체 회식 비용 980천 원 등 8건 7,822천 원을 지출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첨부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나. 업무추진비 과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하여 구분해야 하며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한마당 대회 및 ★★★★★ 체육대회 격려품 2건 69,200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으며, 소속 상근직원 에 대한 격려 직원회식 비용 6건 3,541,000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과목구분에 적합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피복 대신 의류교환 상품권 구입·배부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의류교환 상품권 구매내역

(단위:원)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금액	구입처	집행대상
	계	7,400,000		37명
2014.02.07	현업부서 ◇◇ 근무복 근무티켓 구입	3,000,000	★★	공무원 및 기타
"	현업부서 ◇◇ 근무복 근무티켓 구입	400,000	"	기간제근로자
"	현업부서 ◇◇ 근무복 근무티켓 구입	3,000,000	"	무기계약근로자
"	현업부서 ◇◇ 근무복 근무티켓 구입	1,000,000	○○○○○	무기계약근로자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에도 총7,400천 원을 ★★ 등에서 상품권으로 구입하여 직원 개개인(37명)에게 20만원의 상품권을 배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352,323원

【제 목】 공공요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공공요금 결제계좌 현황

(단위 : 원)

통장잔액 (2015.10.26)	결제대금 미청구액	추징 대상 금액		
		합계	이자발생액	기타(원인 불명)
848,323	496,000	352,323	47,460	304,863

나. 공공요금 결제통장 발생이자 현황

(단위 : 원)

건 명	발 생 일	금 액	세입조치 여부
계	2건	47,460	
공공요금 결제 통장 이자	2014. 12. 28.	2,540	미조치
공공요금 결제 통장 이자	2015. 6. 28.	44,920	미조치

2. 내 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71조

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위 현황의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청구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를 한 후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서를 첨부하여 약정된 자동이체 일까지 청구 결제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약정 기일에 정당하게 품의금액이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청구금액과 지출금액이 일치되도록 결제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며,

착오입금 등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반납조치를 하는 등 계좌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되,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세입부서에 세입조치 하도록 하는 등 해당 계좌에서는 공공요금 사용량만큼의 청구요금에 대하여만 지급명령을 하여야 하고, 정당하게 지급명령된 현금외 다른 현금의 출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감사일 현재 공공요금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 “가”와 같이 통장잔액 848,323원 중 결제대금 미청구액인 496,000원을 제외하고도 총 352,323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위 현황 “나”와 같이 2013.12.29.부터 2015.06.28까지 발생한 예금이자 47,460원을 세입처리 하지 않았고, 그 외 304,863원의 원인 불명 잔액이 확인되었는데도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정리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 결제통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원인 불명 잔액 304,863원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2013년 12월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 47,460원은 세입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17,680원

【제 목】 보험료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명 : ■■■읍 ☆☆1리(▽▽▽,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 공사기간 : '15. 3. 24. ~ '15. 5. 25.
- 계약금액 : 금12,443,000원
- 지출일 : '15. 5. 8.
- 도급사 : 삼척시 ◇◇로4 길 38 (주)◎◎
- 보험료 등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합계	보험료				환경 보전비	제경비	
	산재	고용	건강	연금		일반 관리비	이윤
217,687	145,412	33,291				10,722	28,262

- 일반관리비 : (보험료+환경보전비)*6%

- 이윤 : (보험료+환경보전비+일반관리비)*14.92%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읍 ☆☆1리(▽▽▽,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자로부터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도급내역에 명시된 보험료와 비교 정산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217,680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료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정산한 보험료 217,680원을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08~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74,431원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내역(2015.10.26. 현재)

(단위 : 원)

구분	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274,431			274,431
예치금액	246,161			246,161
잡종금 이자	28,270			28,270

나. 세입세출외현금 발생이자

(단위: 원)

건명	금액	세입조치 여부	비고
계	28,270		
2008년 잡종금 이자	2,470	미조치	
2009년 잡종금 이자	2,480	미조치	
2010년 잡종금 이자	4,190	미조치	
2011년 잡종금 이자	6,140	미조치	
2012년 잡종금 이자	5,610	미조치	
2013년 잡종금 이자	2,700	미조치	
2014년 잡종금 이자	3,330	미조치	
2015년 잡종금 이자	1,350	미조치	

2. 내 용

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 ‘가’와 같이 특정한 사유 없이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안 된 포상금사용 잔액 등 세입세출외현금 246,161원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입세출외현금 발생이자 세입조치 미이행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지급기준에는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납부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 ‘나’와 같이 포상금 사용 잔액 등 2008.6.30부터 2015.6.30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잡종금에서 발생한 이자 28,27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처 분 요 구】

-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이 지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2건 246,161원과, 세입세출외현금 잡종금에서 발생한 이자 28,270원은 □□□□□특별회계로 세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 후 증빙서류 미첨부 : 13건 / 8,613,010원

나. 업무추진비 과목 부적정 : 2건 / 280,010원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삼척시 □□□□□ ◎◎◎◎◎ 회계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 후 증빙서류 미첨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4.10 직원회식 비용 680,000원 등 13건 8,613,010천 원을 지출하면서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첨부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나. 업무추진비 과목 부적정

「□□□□□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압비로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인 응대용 다과용품 구입 등 2건 280,010원을 지출하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등 「□□□□□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집행하시고,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예산편성기준」의 세출예산 성질 별 분류에 따라 과목구분에 적합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